

제 목	국 문	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의 산재보상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영 문	A Study on the Clauses of the Work-Related Diseases due to Overwork in the Workmen's Compensation Law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김 은 희, 문 옥 룬		
	영 문	Eun-Hee Kim, Ok Ryun Moon Dept.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정책학	발 표 자	김 은 희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O),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은 주로 뇌혈관, 심장질환으로서 '과로사'라고 불린다. 과로사는 기술혁신과 산업합리화에 따른 업무상의 긴장과 스트레스의 증가, 경쟁적인 사회구조, 업무의 가중, 장시간 및 불규칙근로 등에 의한 피로의 누적에서 비롯되며 그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는 과로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최근 산업보건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였다.</p> <p>우리 나라에서의 과로사에 관한 인식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과로사에 대한 산재보상에 있어서도 합리적 기준이 일관성있게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이견과 소모를 줄이고 과로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p> <p>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재보상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추세 등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2) 과로사의 개념과 실태에 대하여 고찰한다. 3) 우리 나라의 과로사 산재보상기준을 외국의 것과 비교, 분석한다. 4) 과로사 인정에 있어서 행정결정과 법원판례를 비교, 분석한다. 5) 산재보상의 과로사 인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p>2. 연구 방법</p> <p>연구방법은 각국의 인정기준 비교연구, 그리고 우리 나라 행정결정과 법원판결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인정기준 비교연구는 최근 개정된 일본과 대만의 것을 우리 나라의 것과 비교하였으며, 사례비교분석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심사, 재심사결정자료 121건과 고등법원 판례 73건을 이용하였다.</p> <p>비교분석의 내용은 과로관련성이 인정되는 질병의 종류, 과로의 정의, 과로발생의 시간적 개념, 업무과중성 비교의 근거, 인과관계, 업무수행성에 관한 고려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p>				

3.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과로사 인정기준 비교연구 결과

1) 인정 질병의 종류로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같았으나 심장질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그 종류가 적었다.

2) 과로의 정의에 대해서는 세 나라 모두 발증 전 1주일 이내의 과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만성적 누적 피로에 대한 고려가 적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과중성의 비교 근거로서 평균인 (일반 건강한 성인남자) 중심에서부터 당해 노동자의 개인적 상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4)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입증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반증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등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둘째, 과로사 인정에 관한 행정결정과 법원판례의 비교분석 결과

: 법원의 판례에 비해 행정결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질병에서 일회성 뇌허혈발작이나 심근염 등의 심장질환이 제외되고 있으며, 사인미상의 경우에 대해 판단의 일관성이 적었다.

2) 근무조건에 대한 과로여부 판단시 지속적 장시간 근무, 교대제나 야간근무 등에 애해 부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로사 인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3) 과중성의 비교 근거에 있어서 당해 노동자의 상황(연령, 기존질병, 건강상태 등)에 따르기보다는 평균인을 근거로 하는 경향성이 있다.

4)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수행성 또는 재해주의에 입각하여 불승인된 경향이 남아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보건대 노동부의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법원의 판례와 외국의 추세를 반영하여 그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과로사 예방을 지향하는 산업보건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측면이라 하겠다.

4. 고찰

본 연구는 현재 노동부와 법원간의 판단의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서, 과로사에 관한 의학적 고찰이나 산재보상제도에 관한 산업보건학적 연구 등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